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11월 26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13일, 금천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3일
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11월 26일)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는 규정 추가(안 제2조의2제1항제18호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안은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신설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2) 주요 내용

- 가) 의사자 유족, 의사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는 규정 추가(안 제2조의2제1항제18호 신설)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제4조(지원사업 등)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

<개정 2016.12.30., 2024.10.2.>

1.~3. (생략)

4. 구가 설치·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

5.~7.(생략)

3) 검토 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우리구 조례의 지원 근거에 따라 의사자 유족, 의사상자 및 그 가족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